

충청지방우정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안)

(2022.1.)

구분	비공개대상 정보 목록	사유(법령)	소관부서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전부서
1호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전부서
1호	직무 발명의 내용(※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진흥법 제19조	전부서
1호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 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5항	전부서
1호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전부서
1호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우편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	우편법 제3조	우편영업과 우편물류과
1호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전부서
1호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운영지원과
1호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지역)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34조	운영지원과
1호	병역사항(병동)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력계획과
1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력계획과
1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등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6항	인력계획과
1호	징계위원회 회의자료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인력계획과
1호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제안자의 비공개 요구 시에 한정)	국민제안규정 제7조	인력계획과
1호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인력계획과, 운영지원과
1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감사관
1호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9조	감사관
1호	예금, 가계수표, 채권관리, 압류소송 등 금융거래 내용 및 개인금융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4항	예금영업과 보험영업과
1호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예금영업과
1호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거래 내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예금영업과
1호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심사자료, 심의안건, 결정문, 보험민원 및 채권소송 자료 등 분쟁처리에 관한 정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보험영업과
1호	우편물의 수탁업무와 관련한 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우편물류과 우편영업과
1호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사항 제외)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호	을지연습 및 총무계획(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 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운영지원과
2호	을지연습 및 총무계획(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령회 보고서)	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운영지원과
2호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직장 내 민방위·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운영지원과
2호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될 경우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운영지원과
2호	비밀기록물 관리(비취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전부서
2호	비밀기록물 비밀분류 사유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전부서
2호	전시대비(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인력동원계획, 전시 소방대책)	공개될 경우 전시의 국정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음	운영지원과
2호	귀빈참석 행사(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이나 숙소정보) ※ 행사 종료 후 공개가능 여부 재검토	공개될 경우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인사 등 귀빈의 거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	운영지원과
2호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공개 될 경우 테러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운영지원과
2호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 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 위기대응 매뉴얼, 위기·재난 시 행동요령 등이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	공개될 경우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운영지원과

구분	비공개대상 정보 목록	사유(법령)	소관부서
2호	청사관리(청사 입체도면, 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 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 경비업무 담당자 명단 등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우정계획과, 운영지원과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	전부서
3호	청사방호용 및 경호용 CCTV 위치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있음	운영지원과
3호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운영지원과
3호	경비일지, 순찰일지(순찰시간 및 경로),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있음	운영지원과
3호	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있음	운영지원과, 우정계획과
3호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공개될 경우 참고인 및 피의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감사관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호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공개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를 재검토	전부서
4호	보험사기조사 진행 중인 정보	공개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호수 : 제6호	보험영업과
4호	금융사고 예방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예금영업과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감독(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증거인멸 등 지도감독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감독·점검 종료 후 공개,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전부서
5호	감사(불시감사계획)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감사관
5호	감찰(특정 행위를 한 감찰담당직원 명단)	비노출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감사관
5호	시험(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 ※ 관련호수 : 6호	인력계획과
5호	시험(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문제은행식이 아닌 경우 문제지와 모범답안 공개	인력계획과
5호	시험(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호수 : 6호	인력계획과
5호	시험(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청구자 본인의 답안지의 경우도 비공개	인력계획과
5호	시험(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후 공개	인력계획과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사업계획서/사업검토서)	사업이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전부서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연구용역 중간보고)	용역 완료 전에 공개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용역 완료 후 공개	전부서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위원회 회의록/녹음파일)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전부서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비공식,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	각 기관의 의견이 공식적이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공개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전부서
5호	의사결정과정(공무원노조, 우정노조와의 교섭에 관한 정보)	교섭 진행과정에 지장을 주고 공정한 교섭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조직관리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력계획과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예산 확정 이전에 공개 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계정보과
5호	입찰계약(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호수 : 7호	회계정보과

구분	비공개대상 정보 목록	사유(법령)	소관부서
5호	입찰계약(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후 공개	회계정보과
5호	입찰계약(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영업·경영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호수 : 7호	회계정보과
5호	입찰계약(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평가점수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은 아니지만 공개의 실익이 없는 정보 ※ 관련호수 : 7호	회계정보과
5호	입찰계약(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고 경비의 불합리한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	회계정보과
5호	인사관리(임면, 인사교류, 복무, 급여, 연금,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공적심의 등)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력계획과
5호	인사관리(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심사조서, 입증자료)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호수 : 6호	인력계획과
5호	자금운용계획, 운용 관련 검토서, 운용 내역, 성과분석, 예탁금관리 업무 사항, 자금잔류한도액 및 자과초금 운송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호수 : 7호, 8호	회계정보과
5호	CRM에 관한 사항으로 고객분석내용, 정보현행화, 시스템운영, 우수 고객관리, 마케팅 운영관리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호수 : 7호	예금영업과, 보험영업과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호	공무원(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업무상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직위, 담당업무 등은 공개	전부서
6호	공무원(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전부서
6호	공무원(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공개 시 개인의 명예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전부서
6호	공무원(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전부서
6호	공무원(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인사기록카드)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단,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인력계획과
6호	일반인(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보험증서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전부서
6호	일반인(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종교 등)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전부서
6호	일반인(신고자, 제보자 음성파일 및 신상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전부서
6호	일반인(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정인(본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공개	전부서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등(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전부서
7호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등(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전부서
7호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등(공사도급계약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자의 자금상황, 시공능력, 영업노하우 등을 기준으로 협의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전부서
7호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등(핵심산업기술, 내부 자금,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기술평가 결과)	공개할 경우 해당 단체, 기업, 업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전부서
7호	법인, 단체의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및 환급액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전부서
7호	수탁판매 수수료 및 판매실적 현황, 알뜰폰 관련 계약사항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우편영업과
7호	우표류 제작을 위한 고해상도 원본파일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우편영업과
7호	우편업무 관련 연구개발 성과물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우편영업과
7호	우체국소포 영업, 제휴사항 및 계약업체 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우편영업과
7호	보험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보험영업과
7호	예금보험관련 유형별 위험측정 결과 보고서, 유형별 한도관리 설정 계획서, 사전적 리스크 분석 보고서, 위험반영성과(RAPM) 추진 계획서, RM/ALM시스템 구축 운영 보고서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예금영업과, 보험영업과

구분	비공개대상 정보 목록	사유(법령)	소관부서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호	우정국사 증.개축 및 개.폐 계획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대상이 아님	우정계획과
8호	청사시설 건립.재배치 계획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대상이 아님	우정계획과
8호	자금운용 등 투자계획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대상이 아님	우정계획과, 회계정보과
8호	국유재산 관리 세부계획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대상이 아님	우정계획과